

상지대학교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정 1996. 4. 17.

제41차 개정 2025. 08. 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상지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대학원 학칙 제54조에 의거 대학원 학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전형

제2조(지원학과) 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사학위과정과 동일계 학과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동일계일 경우에는 입학 후 소정의 추가이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학과간 협동과정 입학자는 하위 학위과정 학과(전공)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동일학과(전공)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동일계일 경우에는 입학 후 소정의 추가이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입학지원서류, 전형방법, 합격자전형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학원입학에 관한 내규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0.19.)

제3조(입학 지원 서류) 삭제(2018.10.19.)

제4조(입학전형방법) 삭제(2018.10.19.)

제5조(합격자 전형기준) 삭제(2018.10.19.)

제6조(특별전형 지원 자격) 특별전형 대상자의 자격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며 이를 매 학기 입시요강에 게시한다.

제7조(정원외 입학대상자 전형) 학칙 제9조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재외국민 및 위탁생에 대하여는 구술시험(면접)없이 서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8조(합격사정) 대학원장은 입학사정 결과를 작성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합격대상자를 선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9조(입학절차)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교가 지시하는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6조(입학자격)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이 되거나 이유 없이 등록 및 제반 절차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 ② 입학전형 과정에서 부정확한 방법으로 합격 하였거나 지원 자격 미달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재입학의 절차)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시작 전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소정 양식)와 관련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9.)

- ②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의 재입학 재학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기타 제적사유로 제적된 자의 재학연한은 제적이전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4.15., 2019.11.14.)

- ③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석사과정생 재입학자 중 비논문학위취득과 관련한 사항은 재입학 당시의 비논문학위취득 운영내규에 의한다. (항 신설 2014.4.15.)

제3장 학점등록 및 수료자 등록

제11조(학점등록) ① 수업연한 이내에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그 학점이 1~3 학점까지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을 4학점 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9., 2011.4.19.)

- ② 재입학생 중 학점등록 대상자는 제1항에 의한 학점등록금과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규정된 학점외 초과 신청한 자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3분의 1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8.4.24.)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원 정원의외로 개설한 외국인 유학생 석사과정생 중 규정된 학점외 초과 신청한 자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5.08.14.)

제12조(수료자 등록) ① 수료자 등록은 학위청구논문 발표 신청서 제출로 대신한다.

- ② 수료자가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연구등록에 관한 내규는 따로 정한다.

제4장 휴학 및 복학

제13조(휴학의 종류 및 구비서류) 휴학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휴학

가. 가사사정으로 인한 휴학 : 휴학원

나. 질병으로 인한 휴학 : 휴학원, 1개월 이상의 진단서

다. 기타휴학 : 휴학원, 기타 가능한 서류

2. 군 입대 휴학 : 휴학원, 입영통지서

제14조(휴학신청서 제출시기) 휴학신청서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휴학원은 매 학기 등록기간 마감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후에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삭제(2019.11.14.)

제15조(휴학기간) ① 휴학 기간은 한 학기 단위로 연속 4학기까지 할 수 있고, 통산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학원장은 1학기에 한하여 휴학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6.8.1., 2019.11.14.)

② 휴학기간이 종료된 자가 계속하여 휴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학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입대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항 신설 2006.8.1.)

제16조(복학시기) 복학은 해당 학기 지정한 복학기간 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등록금 인정) ① 수업일수 1/3 이전에 휴학한 자에게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대체 인정한다.

② 수업일수 1/3선 이후에 휴학한 자에게는 학부의 학칙시행세칙 “휴학자의 등록금 대체” 조항의 기준에 따른다.

제5장 수강신청 및 성적

제18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기일 내에 주임(지도) 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정정 기간은 매 학기 개강 후 1주 이내로 한다.

③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기 인정일 이전에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그 교과목을 포기할 수 있다.

④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일단 신청한 과목을 취소하지 않고 수강도 하지 않을 경우 그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⑤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9조(성적 정정) 교과목 담당교수의 착오로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오기 되었을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성적 정정원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제20조(군 입대 휴학자의 성적인정) 수업일수 3분의 2가 경과한 후 군 입대 휴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담당교수는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제6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목 및 이수학점

제21조(교과목의 구분) ① 일반대학원(학과간협동과정 및 계약학과 포함), 평화안보·상담심리 대학원은 계열공통, 전공, 논문학기 필수로 구분한다. (개정 2008.1.3., 2010.6.17., 2011.4.19.)

②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사회융합대학원은 전공과 논문학기 필수로 구분한다. (개정 2008.9.9., 2018.10.2.)

③ 교육대학원은 교직, 전공, 논문학기 필수로 구분한다.

제22조(교육과정 편성 및 개설 교과목수) 교육과정 편성은 각 학과에서 교육과정 편성(안)을 작성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하며, 세부사항은 대학원 수업관리 운영내규로 정한다.

제23조(이수학점) ① 각 대학원별 교과목 구분에 따른 이수학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8.9.9., 2009.4.23., 2010.6.17., 2011.4.19., 2011.9.15., 2011.12.22., 2014.1.24., 2015.4.20., 2018.4.24., 2018.10.19., 2022.7.21.)

②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칙 제25조(학점)에 따라 학기당 취득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4조(추가이수과목) ① 일반대학원의 각 학위과정별 추가이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학사학위과정과 전공이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한 9학점(선수과목 6학점, 고급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박사과정 : 석사학위과정과 전공이 다른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한 18학점(선수과목 15학점, 고급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특수대학원의 추가이수과목은 학과에서 지정한 선수과목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학과에서 지정한 추가이수과목(선수과목)과 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유사과목이 있을 경우 학과 전공교수들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이수과목(선수과목) 인정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인정할 수 있다.

④ 추가이수과목(선수과목)은 입학과정의 전 학위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하위과정에서 폐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일시적으로 교과목을 대학원에 개설할 수 있다.

⑤ 추가이수과목(선수과목)은 학위취득 학점에 가산되지 아니하며, 취득성적은 C 학점 이상을 인정한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 추가이수과목에 관한 운영 내규로 정한다.

제25조(교원자격증 취득) ① 교육대학원 재학생으로서 교원자격증을 취득 하고자 하는 자는 석사학위 요건을 갖추고 매년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4.4.3.)

1. (개정 2008.9.9.) 삭제 (2014.4.3.)

2. (개정 2008.9.9.) 삭제 (2014.4.3.)

②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선수과목은 수업 운영의 내실화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학기당 3학점 이내(총 15학점 이내)에서,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학기당 6학점 이내(총 28학점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9.9., 2014.4.3.)

③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 년 한 내에 대학원 개설과목 및 선수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이 세칙 제9조(학점등록)에 따라 등록금을 징수한다.

④ 교직과목 이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행하는 교원 자격 검정업무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08.9.9.)

제2절 시험과 성적

제26조(시험) 교과목별 담당교수는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과제물 부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7조(성적 및 평가) ① 각 교과목의 성적은 학칙 제24조(성적평가)에 따라 등급으로 표시한다.

② 성적평가는 중간시험, 기말시험, 수시평가로 할 수 있다.

제28조(성적의 공시)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성적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 공시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의를 확인한 후 성적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출석부, 과제 보고서, 실험실습 보고서, 시험 답안지 등의 성적평가 자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강사의 경우는 학과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한다.

1. 사무 착오에 의한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
3. 시험 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
4.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 학기 성적
5. 정학이상의 징계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이상 결석 또는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의 당해 학기 성적의 전부(교육실습 성적은 제외)

②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의 잘못이 아닌 담당교수의 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대학원교학부에서 정하는 소정 기일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제3절 전공변경

제30조(대학원 전공변경) ① 전공(전과)을 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2학기 시작 전 3주 이내 기

간에 1회에 한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9.9.)

1. 전공(전과) 변경 신청서
2. 주임(지도)교수의 동의서
3. 주임(지도)교수의 학점 인정 조서(성적증명서)

② 전공(전과) 변경자는 변경된 전공에서 인정된 학점 외의 잔여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장 장학금

제31조(장학금 지급) 품행이 방정 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학원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등록금 감면) 본 대학원생으로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과 직계가 족 및 배우자, 조교, 사립학교 교직원, 교사, 공무원, 군인, 법인체 임직원, 협약기관 등 대학 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정된 자에게는 등록금의 일부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제8장 자격시험

제1절 외국어시험

제33조(외국어시험 응시절차) 외국어시험에 응시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한 후 외국어시험 응시원서를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한 후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34조(외국어시험 응시자격) 외국어시험의 응시 자격은 9학점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특수대학원 제외) (개정 2007.7.11., 2014.4.3., 2017.8.14.)

제35조(외국어시험 출제위원) 외국어시험의 출제위원은 대학원장이 지명하거나 주임(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36조(외국어시험 시험 시기)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4.24.)

제37조(외국어시험 과목) ①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석사학위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석사학위 외국어시험은 내국인은 영어로 하며, 외국인인 출신국가의 언어가 아닌 외국어 또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의 전공 수학 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으나 주임(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박사학위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박사학위 외국어시험은 내국인은 영어, 독일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 한문 중 지원자가 택일하여 응시하며, 외국인인 출신국가의 언어가 아닌 외국어 또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의 전공 수학 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으나 주임(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개정 2017.8.14.)

④ 외국어시험의 수준은 외국어 독해능력이 해당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정도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

제38조(외국어시험 재시험) 외국어시험 불합격자는 이후에 실시되는 동일시험에 재 응시 할 수 있다.

제39조(외국어시험 합격인정) ① 외국어시험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② 입학 시 영어성적 우수자 및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어학능력시험(TOEFL, TOEIC, TEPS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시험 원서 제출시 본인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합격 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절 종합시험

제40조(종합시험 응시절차 및 신청)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한 후 종합시험 응시원서를 소정 기한 내에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한 후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항 번호 신설 2014.1.24.)

② 종합시험 신청 시 해당 학과(전공) 지정과목을 확인 후 학점을 취득하거나, 수강중인 과목중에 석사학위 과정은 3과목, 박사학위 과정은 4과목으로 신청한다. (항 신설 2014.1.24.) (제목개정 2014.1.24.)

제41조(종합시험 응시자격)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외국어시험(특수대학원 제외)에 합격한 자로서 취득학점 18학점(평화안보·상당심리대학원 16학점<안보학과는 합동군사대학 학점인정 시 16학점 취득예정자 포함>, 사회복지정책대학원 27학점)이상 취득하고 연구윤리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07.7.11., 2014.1.24., 2019.4.1., 2024.6.23.)

제42조(종합시험 출제위원)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대학원장이 지명하거나 주임(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43조(종합시험 시험 시기)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4.24.)

제44조(종합시험 과목) ① 각 학과(전공)의 주임(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은 석사학위 과정은 3과목(계열공통 1과목, 전공 2과목), 박사학위 과정은 4과목(계열공통 1과목, 전공 3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4.1.24.)

② 전항에 의해 지정된 과목에는 반드시 계열공통 및 전공과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직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부전공 이수자 및 평생교육전공자는 전공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0.11.18., 2014.4.3.)

③ 종합시험은 각 학위과정의 논문을 독자적이고 창의적으로 작성하는데 필요한 전공분야 및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

제45조(종합시험 재시험)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이후에 실시되는 동일 시험에 재 응시할 수 있다.

제46조(종합시험 합격인정) 종합시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9장 학위청구논문

제1절 논문지도

제47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절차) ①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 제출 자격은 대학원 학칙 제33조에 의거한다.

② 제문 제출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논문지도교수 선정
2. 논문계획서 제출(비 논문 학위 취득 신청자는 학과 주임(지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비 논문 학위취득 신청서 제출)
3. 논문 예비발표
4. 논문심사 신청서 및 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
5. 논문심사 원고(석사학위는 3부, 박사학위는 5부)와 심사료 납부
6. 논문심사 완료 후 20일 이내 하드커버(심사위원 인준을 받음) 1부, 소프트커버 7부 제출
(개정 2008.4.24.)

제48조(논문지도교수 자격) 논문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동일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전임교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8.1., 2010.7.6., 2012.5.1., 2020.6.1.)

제49조(논문지도교수 선정) ① 논문지도교수는 2학기에 학생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학생이 연구 하고자 하는 전공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06.8.1.)

② 논문지도교수는 주임(지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퇴직, 면직 또는 연구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주임(지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 학생수는 학기별, 학위과정별 3명을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⑤ 논문지도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공동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50조(논문계획서 제출)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학과 주임(지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논문지도 기간) 논문지도 기간은 논문계획서 제출 이후 본 심사 완료시 까지 1학기 이상 지도를 받아야 하며, 지도교수가 변경된 경우의 논문지도 기간은 변경 전 논문지도 기

간을 합산하여 위의 기간 이상을 지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24.)

제2절 논문심사위원

제52조(논문심사위원 구성) ①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전공영역교수(지도교수 포함) 3명,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전공영역교수(지도교수 포함)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05.26.)

② 삭제 (개정 2025.05.26.)

③ 삭제 (개정 2025.05.26.)

④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5.05.26.)

제53조(논문심사위원장 선정 및 임무) ①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논문지도교수 이외의 1명을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승인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논문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논문심사 의결권은 기타 논문심사위원과 동등하다.

제54조(논문심사위원 임무) ①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의 논문발표 요지, 논문내용, 참고 문헌 및 논문체제 등을 심의하여 학술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이 본인 혹은 타인에 의해서 이미 발표된 적이 있는지, 이미 발표된 부분이 논문에 삽입되어 있거나 부분논문으로서 구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 위원회는 재적인원 전원의 출석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의결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분의 2,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분의 4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제55조(논문심사위원 변경) 논문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위원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주임(지도) 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논문작성

제56조(논문 표기 언어) 논문은 원칙적으로 국문으로 작성하되 한문을 혼용할 수 있으며,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문 성격상 외국어로 작성할 때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제57조(논문양식 및 체계) ① 논문은 다음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1. 크기 : 4× 6배판(19.3cm× 26.5cm)
2. 지질 : 70~100파운드의 백색 또는 미색 모조지

3. 인쇄방식

가. 내지 : 워드프로세서 편집에 의한 레이저프린트 또는 마스터, 오프셋 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단면인쇄 또는 양면인쇄 모두 가능하며 좌철 제본함.

나. 표지 : 활판 또는 공판인쇄를 원칙으로 함.

4. 표지색

가. 석사학위 : 하드커버는 검정곤색, 소프트커버는 회색

나. 박사학위 : 하드커버는 흑색, 소프트커버는 회색

다. 특수대학원 : 하드커버는 검정곤색, 소프트커버는 황갈색

② 논문은 다음의 체제를 갖추고 주어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1. 겉표지(별지 1)

2. 등표지(별지 2)

3. 속표지(별지 3)

4. 인준서(별지 4)

5. 감사의 말씀 또는 사사

6. 목차

가. 내용목차

나. 표목차

다. 그림목차

7. 국문초록

8. 본문(별지 5)

9. 참고문헌

10. 부록 및 색인

11. 백지

12. 영문초록

13. 뒷표지

제4절 논문심사 및 제출

제58조(논문심사 방법) ① 논문심사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예비심사, 본 심사(구술심사 포함)로,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예심 1회, 본심 2회 이상(구술심사 포함)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4.1.24.)

② 논문심사의 1심은 예심으로서 논문심사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2심 이후부터는 논문내용에 대한 종합심사를 심사하며, 세부적인 심사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는 석·박사 학위청구 논문 심사내규로 정한다.

③ 일반대학원 한의학과는 중간논문 발표를 재학연한 내에 1편을 국내·외 한의학 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08.4.24.)

제59조(심사자료 제출)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참고논문 또는 부분, 역본, 모형, 표본 및 기타 논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논문심사기간 및 연장) ①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소정 기일 내에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학위청구 논문의 수정 보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기간 중 논문심사를 연기 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논문심사기간 2분의 1 이내에 논문심사 연기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심사료를 반환한다.

③ 논문심사 기간이 2분의 1 이상 경과한 후에는 논문심사 연기원을 제출할 수 없다.

제61조(합격기준)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의 합격기준은 재적 심사위원의 3분의 2,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의 합격기준은 재적 심사위원의 5분의 4 이상으로 하며 “가” 또는 “부”로 판정한다.

제62조(논문제출 시한 및 재심사) ① 학위논문은 재학연한 이내에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제출시한을 넘겼을 경우 주임(지도)교수의 요청으로 대학원장 제출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항 신설 2014.4.3.)

② 학위청구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수정보완을 실시하여 재심사 받을 수 있다. 단, 재학연한 이후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항 번호 신설 2014.4.3.)

(제목 개정 2014.4.3.)

제63조(논문심사 결과 보고)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최종학위논문 제출) 심사용 논문 제출자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학위 논문 작성 및 제출요령에 의거하여 인쇄 제본한 후 석사 및 박사논문 공히 1부는 논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은 하드커버로 대학원 교학부에 1부를 제출하고, 3부는 하드커버로 통과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학술정보원에 제출한다. 단, 법학 관련학과는 4부를 학술정보원에 제출한다. (개정 2008.4.24., 2011.12.22.)

제65조(박사학위 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9.)

부칙

이 세칙은 199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1997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199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3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세칙의 시행으로 종전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경영대학원 학칙시행세칙, 행정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산업환경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교육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세칙은 2005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세칙의 시행으로 폐지된 규정 중 이 규정과 상이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세칙 시행에도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세칙은 2007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세칙은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2항에 의거 변경된 세칙은 2007학년도 후기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변경 세칙은 2007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세칙은 2008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세칙은 200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3항에 의거 변경된 세칙은 200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변경 세칙은 2008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1항에 의거 변경된 세칙은 2009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변경 세칙은 200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3조 1항에 의거 변경된 세칙은 2009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변경 세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세칙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3조 1항에 의거 변경된 세칙은 2010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변경 세칙은 201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3조 1항에 의거 변경된 세칙은 2010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변경 세칙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세칙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에 의거 변경된 세칙은 2011학년도 추가, 수시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변경 세칙은 201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세칙은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며, 2011학년도 전기(2012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변경 세칙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70, 2014.01.24.)

이 변경 세칙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44, 2014.04.03.)

이 변경 세칙은 201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82, 2014.04.15.)

이 변경 세칙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51, 2015.04.20.)

이 변경 세칙은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학원교학부-440, 2017.08.14.)

이 변경 세칙은 201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학원교학부-219, 2018.04.25.)

이 변경 세칙은 201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학원지원팀-920, 2018.10.10.)

이 세칙은 2018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학원지원팀-201, 2019.04.01.)

이 세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학원지원팀-574, 2019.11.14.)

이 세칙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학원지원팀-253, 2020.06.01.)

이 세칙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학원지원팀-525, 2020.10.14.)

이 세칙은 202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학원지원팀-525, 2020.10.14.)

이 세칙은 202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학원지원팀- 328, 2022.07.21.)

이 세칙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3조 1항에 의거 변경된 세칙은 2022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학원지원팀-1569, 2023.07.18.)

이 세칙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학원지원팀-1627, 2024.06.23.)

이 세칙은 202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173, 2025.05.14.)

이 세칙은 202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학원지원팀-2441, 2025.08.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등록 추가 조항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세칙은 2025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시행

한다.

② 이 세칙 시행 이전의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세칙에 의한다.

[별표 1] (개정 2022.7.21.)

각 대학원별 최저 이수학점

대 학 원	과정	학과(전공)	계열공통	전 공	교 직	계
일 반 대 학 원	박사	일반학과 (협동과정포함)	3학점	이수학점내	-	36학점이상
		한의학과	12학점	24학점	-	
		계약학과	-	36학점	-	
	석사	일반학과 (협동과정포함)	3학점	이수학점내	-	24학점이상
		한의학과	9학점	18학점	-	27학점이상
		계약학과	9학점	15학점	-	24학점이상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	(전 학과)	-	36학점	-	36학점이상
사회융합대학원	석사	자연치유학과를 제외한 학과	-	24학점	-	24학점이상
		자연치유학과	6	18학점	-	24학점이상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석사	(전 학과)	6학점	이수학점내	-	24학점이상
교 육 대 학 원	석사	평생교육전공을 제외한 전공	-	16~18학점	6~8학점	24학점이상
		평생교육전공	-	24학점	-	24학점이상
		교직이수 (예정)자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기준 적용			
		부전공이수 (예정)자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기준 적용			

[별지 1] 학위논문 겉표지

[별지 2] 학위논문 등표지

※ 유의사항

1. 겉표지는 세로 26.5cm, 가로 19.3cm(4 × 6 배판으로 한다.)
2. 학위논문과 지도교수와의 사이는 0.5cm를 띄운다.
3. 상지대학교/○ ○학과 ○ ○전공/성명/200 년 월 일 사이는 1.0cm를 띄운다.
4. 20 년 월 일 에는 학위청구논문심사가 끝나는 달(매년 6월, 12월)을 기입한다.

↑ 3.0cm ↓	← 3.0cm → ○학○사 학위논문(16pt)	← 3.0cm →	↑ 2.0cm ↓
← 3.0cm → 지도교수 ○ ○ ○(16pt)	← 0.5cm	← 3.0cm →	학 위 취 득 년 월
↑ 3.0cm ↓	논문제목 (20 ~ 24pt)	← 1.0cm	석(박)사 학위논문
	- 부 제 목 - (13 ~ 14pt)		
	상지대학교 ○ ○ 대학원(18pt)	← 1.0cm	논 문 제 목
	○ ○ 학과 ○ ○전공 (16pt)	← 1.0cm	
	홍 길 동 (18pt)	← 1.0cm	성 명
	200 년 월 일 (18pt)		
↑ 3.5cm ↓			↑ 2.0cm ↓

[별지 4] 인준서

↑
6.0cm
↓

○○○○의 ○○○학 석(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20pt)

↑
3.0cm
↓

← 4.0cm →	심사위원장 ○ ○ ○ (인) (13~14pt)	← 4.0cm →
	← 2.0cm(석)/1.5(박)cm	
← 4.0cm →	심사위원장 ○ ○ ○ (인) (13~14pt)	← 4.0cm →
	← 2.0cm(석)/1.5(박)cm	
← 4.0cm →	심사위원장 ○ ○ ○ (인) (13~14pt)	← 4.0cm →
	← 2.0cm(석)/1.5(박)cm	
← 4.0cm →	심사위원장 ○ ○ ○ (인) (13~14pt)	← 4.0cm →
	← 2.0cm(석)/1.5(박)cm	
← 4.0cm →	심사위원장 ○ ○ ○ (인) (13~14pt)	← 4.0cm →
	← 2.0cm(석)/1.5(박)cm	

상지대학교 ○ ○ 대학원(22pt)

○○○전공 (13 ~ 14pt)

홍 길 동 (22pt)

200 년 월 일 (22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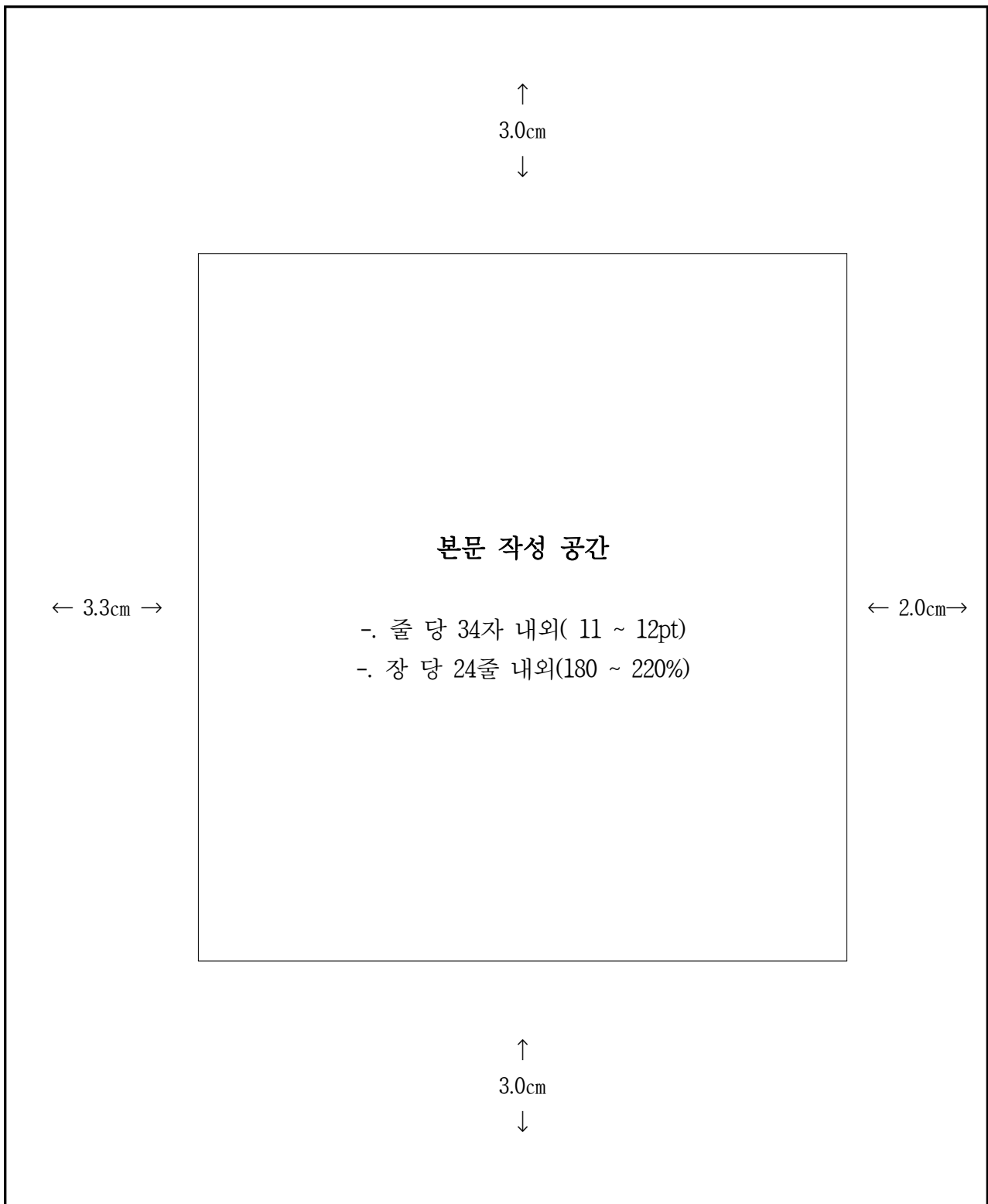
← 0.5cm

← 0.5cm

← 0.5cm

↑
3.0cm
↓

[별지 5] 인준서



※ 유의사항

1. 쪽 번호의 위치는 용지 하단에서 위로 2.0cm 위치에 둔다.